

일본 해안법 개정

-방재 · 감쇄 대책 강화와 적절한 유지관리를 확보

해안법 일부개정법안이 지난 6월 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회 일치로 가결, 성립되었다. 이번 개정법안은 해안의 방재 · 감쇄(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대책이 한층 강화되고 적절한 유지관리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초 해안법은 해안을 쓰나미, 고조(高潮)등의 재해로부터 막고, 국토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6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1999년에 '환경의 보전' 과 '적정한 이용' 을 법목적으로 추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15년만에 대대적인 개정이 진행된 것이다. 개정법안의 내용은 다음의 5가지 항목이다.

- 해안의 방재 · 감쇄 대책 강화

- ① 쓰나미 등에 대해 감쇄 기능을 가지는 '녹색 방파제' 와 같은 견고한 구조의 해안제방 등을 해안보전시설로 개념 부여
- ② 해안관리자는 수문, 독문 등, 현장 조작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작방법이나 훈련 등을 정한 조작규칙을 의무적으로 제정
- ③ 해안보전시설을 적절하게 유지 · 수선하기 위한 기준 마련
- ④ 좌초한 선박이 해안보전시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안관리자가 철거 지시 가능
- ⑤ 해안관리자는 해안의 관리에 협력하는 법인 · 단체를 해안협력단체로서 지정

각 항목마다 배경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 방파제

해안보전시설로서 해안제방의 경사면에 흙을

쌓고 나무를 심는 '녹색방파제' 등의 개념을 확고히 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방조제를 넘은 쓰나미에 의해 육지 쪽 방조제와 접한 지면이 씻겨나가고, 피복공이 유출되어 방조제가 무너져버렸다. 쓰나미가 발생하여 비록 방파제를 넘는다고 해도, 방파제가 무너지는 시간을 지연시켜 주민의 피난 시간을 벌 수 있음과 동시에, 침수면적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파제 등을 견고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녹색 방파제는 콘크리트로 덮인 제방의 비탈진면에 흙을 쌓고 나무를 심는 것으로, 심은 나무가 흙 깊이 뿌리를 내려 쓰나미에 대해 강하고 단단한 제방이 되는 것이다. 나무가 제방을 넘는 쓰나미의 기운을 약화시키고 쓰나미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법안에서는 '녹색 방파제' 와 같이 해안사업과 다른 관련 사업과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상정해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② 수문 · 독문의 조작 규칙

동일본 대지진으로 소방관 254명이 희생되었다. 이 중에는 수문의 폐쇄 등으로 희생된 59명이 포함되어, 현장조작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에 수문 · 독문 등은 약 27,000개로 그 중 약 1,400개가 자동화 ·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약 5,200개는 상시 폐쇄되어있으며, 나머지 약 20,000개가 현장조작이 필요한 시설이다. 그 중에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이 약 7,100개로,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해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 4월에 '쓰나미 · 고조 대책 수문 ·

독문 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농어촌지역 정비 교체 비용을 확충하고 해안관리자에 대해 수문·독문 등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운용에 관한 계획 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본 개정에 의해 수문·독문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조작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확실하게 조작 가능한 조작방법, 훈련 등에 관한 조작규칙 등을 제정하였다. 해안의 소관별로 봐도 어항해안은 항만해안 다음으로 많은 수의 수문·독문이(31%) 있어, 적절한 정비·운영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③ 해안보전시설의 적절한 유지·수선

시설의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고, 해안제방 등 중 건설된지 50년 이상 된 것들이 현재 약 40% 정도이며, 2030년에는 약 70%에 달할 예정으로 노후화 대책이 시급한 과제이다. 2014년 3월에 '해안보전시설유지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갱신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도 예산에서 장수명화계획 책정에 필요한 경비가 교부금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안관리자에 의한 적절한 해안보전시설의 유지·수선을 위해, 예방보전의 관점에서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수선한다는 유지·수선의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해안관리자의 해안보전시설에 관한 유지·수선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④ 방치 좌초선 대책

지금까지, 해안보전구역내 육역(陸域)에서는 모래사장 등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해안관리자는 선박의 방치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 철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해안보전구역내 해역(저조선 보다 바다쪽)에서 선박이 좌초하고 방치

된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에 아오모리현 후카우라초에서 선박이 좌초된 채 방치되었는데 그 철거를 명할 수가 없어 대응에 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법안 개정으로, 해안보전구역내 해역에 있어서도 해안관리자가 선박의 철거명령이나 철거되지 않은 경우의 행정집행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⑤ 해안협력단체

최근, 많은 민간 법인·단체가 해안 청소나 희소동물 보호,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행하고 있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안관리를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역에 뿌리 내린 민간에 의한 활동을 촉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안 유지 등에 관한 활동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해안협력단체로서 법률로 정하였다.

해안관리단체가 해안관리자의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해안관리가 충실하게 행해질 수 있게 되었다.

- 지역 실정에 맞는 해안관리의 사례로서는
- 해안 청소, 해안 식생의 식재·보호 활동
 - 해안의 부적절한 이용 파악·감시
 - 희소동물의 조사보호 활동
 - 해안 안전이용강습, 환경학습 등이 있다.

해안협력단체가 그 활동을 행하는데 있어 점용허가 등, 해안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안관리자와의 협의로 가능케하여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 해안관리자는 해안협력단체의 활동에 관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조언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안협력단체가 법률에 명시된 단체가 됨으로써, 사회적 신용이 향상되고, 원활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일본 공익사단법인 전국어항어장협회 어항어장월보

‘2013년 일본수산백서’ 중 안전하고 활력있는 어촌 만들기 안내

지난 5월 23일 발표된 ‘일본수산백서’는 수산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매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산 동향과 수산에 관한 시책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번 수산 백서에서는 양식업의 지속적 발전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산자원 관리를 시작으로 수산물 안정공급과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 알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수산백서’ 전문은

<http://www.jfa.maff.go.jp/j/kikaku/wpaper/index.html>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2013년 일본수산백서 중 ‘안전하고 활력 있는 어촌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각 어항의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업자단체는 2013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실정에 맞춘 ‘어항의 활력재생 플랜’을 제정하고, 플랜에 실린 내용의 실시를 개시

(2) 수산업 · 어촌의 지역자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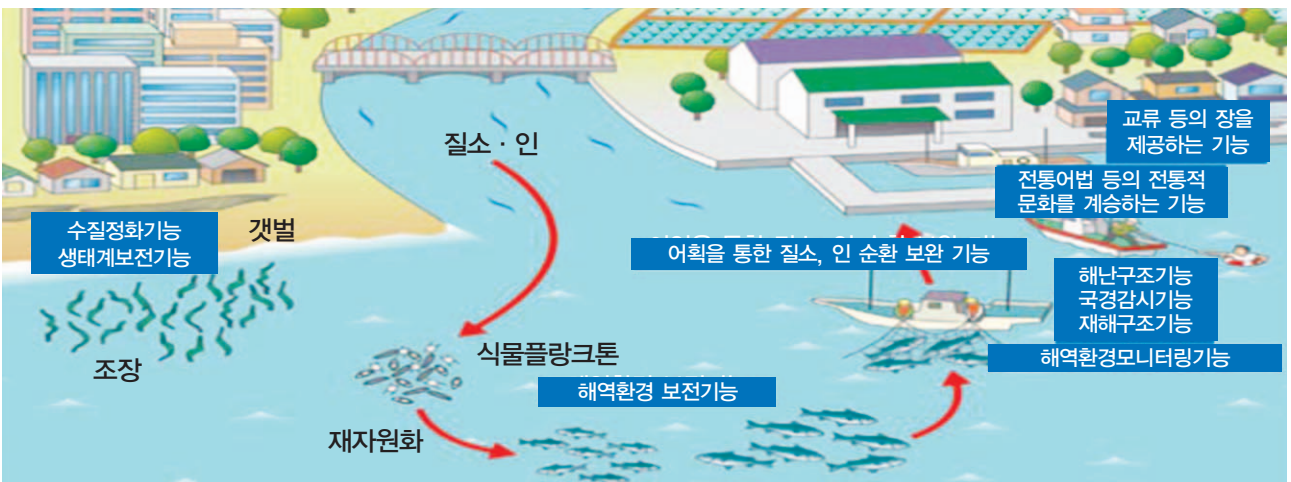
- 어촌은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그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나, 낚시, 해수욕 등 여가활동도 가능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편, 많은 관광객의 방문은 고용을 창출하고, 어촌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 그래서 각 어촌이 가진 지역자원의 활용 방안 도출이 중요

- 나라에서는 어업과 가공 · 유통업의 일체화와 관광업과 융합하는 등 ‘6차산업화’ 계획을 추진. 어업인과 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획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방안이나 지역 소비자가 출선해서 지역 특산품을 소비하는 방안도 추진

안전하고 활력 있는 어촌 만들기

(1) 어항의 활력재생 플랜

- 어업은 어촌의 산업기반이기 때문에,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어업의 활성화가 불가결



수산업 · 어촌의 다면적 기능

(3) 수산업 · 어촌이 발휘하는 다면적기능

- 수산업 · 어촌은, 수산물의 안전공급이라는 본래적 기능 이외에, 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기능, ② 해난구조 및 국경감시활동 등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전하는 기능, ③ 주거나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 ④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등 다면적인 기능을 발휘
- 어촌인구의 감소나 고령화에 의해,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우려 됨. 수산업 · 어촌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에 이바지하는 지역 활동에 대해 나라가 지원하는 제도를 2013년부터 시작


(4) 수산업 진흥에 있어 어항의 역할

- 어항은 어선의 계류, 보급, 수리, 양륙지로서 어업에 불가결. 일본 연안에는 2,909개의 어항이 입지. 연안어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일본 어업의 실정을 반영해서, 어항의 약 4분의 3은 주로 지역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제1종 어항
-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식품을 원하고 있는 지금, 어항에 있어서도 적절한 위생 관리가 필요. 수산청에서는 수산물의 유통거점인 어항에 대해, 위생관리대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생적인 어항 정비 방안을 지원

(5) 어촌지역에 있어서 방재기능 강화와 감재 대책 추진

- 일본 연안선 총 길이는 약 35,306km. 한편 어업 촌락수는 6,298개, 평균 연안선 5.6km마다 어업 촌락이 위치
- 어촌 대부분은 가파르고 험준한 해안, 낙도, 반도 등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가옥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재해에 취약
- 어항은, 재해로 육로가 막혔을 경우 사람의 이동이나 물자의 반출입에 중요. 수산청에서는 2013년 8월 30일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바탕으로 한 어항시설 지진 · 쓰나미 대책의 기본적 방침’을 정리

(6) 수산업 · 어촌지역의 에너지절감과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 국가가 주체가 되어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바다 및 후쿠시마 바다에서 부체식해상풍차(浮體式洋上風車)로 풍력발전 테스트를 진행 중. 해상풍력발전소는 사람이 상주하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등의 기술적인 과제가 있으므로, 어업인 등 다른 바다 이용자들과의 조정이 중요 

출처 : 일본 수산청

제1종~제4종 어항의 어항수와 이용 범위

단위 : 항

		평성15년 (2003)	20 (2008)	23 (2011)	24 (2012)	25 (2013)
어항수		2,927	2,921	2,914	2,912	2,909
제1종	이용범위가 지역 어업이 중심	2,217	2,210	2,205	2,200	2,179
제2종	이용범위가 제1종어항보다 넓고, 제3종 어항에 속하지 않는 어항	495	496	496	499	517
제3종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것	101	101	101	101	101
특정제3종	제3종어항 중에 수산업 진흥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어항	13	13	13	13	13
제4종	낙도 및 주변 지역 어장의 개발 또는 어선이 피난상 필요한 곳	101	101	99	99	99

자료 : 수산청조사